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2019. 12. 13.

사회건설위원회

### 1. 심 사 경 과

- 가. 발의일자 : 2019년 11월 13일
- 나. 발 의 자 : 유승용 의원 외 4명
- 다. 회부일자 : 2019년 11월 20일
- 라. 상정일자 : 제218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 
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(2019. 12. 5.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유승용 의원)

- 가. 제안이유
  -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대상에 5·18민주유공자를 추가하여 그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민주화 정신을 고취하려는 것임.
- 나. 주요내용
  -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대상에 5·18민주유공자 추가(안 제3조)
  -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에 5·18민주유공자 추가

(안 제10조 및 제11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이정옥)

- 본 건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대상에 5·18민주유공자를 추가하여 그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민주화 정신을 고취하고자 제출된 개정조례안임.
- 주요 내용은
  - 안 제3조, 제10조 및 제11조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대상,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에 5.18민주유공자를 추가 규정하였음.
- 본 조례안은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.18민주유공자를 예우와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타 국가유공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처우를 일부 개선함으로써 그 노고에 다소나마 보답하기 위한 것으로, 내용이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됨.

### 4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유승용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4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11월 일

발의자 : 유승용 의원 외 4명

## 1. 제안이유

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대상에 5.18민주유공자를 추가하여 그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민주화 정신을 고취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가.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대상에 5.18민주유공자 추가

(안 제3조)

나.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에 5.18민주유공자 추가

(안 제10조 및 제11조)

## 3. 개정안 : “별첨”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필요 시 반영

다. 입법예고 (2019. 11. 18. ~ 11. 22.) : 의견 없음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

제10조제1항 중 “제5호”를 “제6호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본문 중 “제5호”를 “제6호”로 하고 “국가유공자”를 “유공자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적용대상)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“구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사람으 로 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6. (생략)</p> <p>제10조(보훈예우수당의 지급)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5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급 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(이하 “수당”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 <p>제11조(사망위로금 지급) ① 구청 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<u>국가유공자</u> 본인이 사 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</p>	<p>제3조(적용대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「<u>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 한 법률</u>」의 적용을 받는 단 <u>체 또는 회원</u></p> <p>7. (현행 제6호와 같음)</p> <p>제10조(보훈예우수당의 지급) ① ----- <u>제6</u> <u>호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1조(사망위로금 지급) ① ---- ----- <u>제6호</u>---- ----- <u>유공자</u> ----- -----</p>

망위로금(이하"위로금"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(사망일)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,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.

② ~ ⑤ (생략)

-----  
-----.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